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 실시〉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180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 시 사전안전점검 실시(안 제13조의2) ..	2
2. 시행일 및 적용례(안 부칙)	9
참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희 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24.
3. 회부연월일 : 2024. 7.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소규모화 또는 인구이동 및 대
규모 개발에 따른 과대·과밀학급 등 교육공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
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교 유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논의에 따르면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서는 민간 건물을 활용한 소규모 학교가 고려되고 있는데, 기존 건물
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시설로서의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
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기존 건물을 교육시설로 사용 시 사전안전점검 실시(안 제13조의2)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장이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시설 안전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3조의2(사전 안전점검의 실시)</u> ① <u>교육시설의 장은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사전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현행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이라 함) 제2조¹⁾는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의 장 등의 용어

1) 「교육시설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를 정의하고 있는데,

교육시설이란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④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함), 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을 말하며,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함.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생략)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교육시설 범위) 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시설을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3.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방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군간호사관학교
5.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경찰대학
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육군3사관학교
7. 삭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현행 「교육시설법」은 교육시설의 장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²⁾에 따르면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

2) 「교육시설법」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1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내진 성능 평가, 그 밖에 각종 진동·충격과 교육시설의 하중(荷重)을 고려한 안전성 확보 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피난·방화·소방 시설의 설치 및 안전 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및 건강을 고려한 설계·시공 및 교육시설의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감염예방,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감염병의 예방·관리,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친환경 재료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야 하며,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 향후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요한 기준을 준수하고, 동 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13조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

개정안은 교육시설의 장이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교육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대도시 지역에서도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반면, 특정 지역은 학교 선호도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쏠림현상으로 과대·과밀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바,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과대·과밀학급 문제를 해소 하기 위하여 도심과 같이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기존 민

3) 「교육시설법」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간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소규모 학교로 활용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시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시설로서 최소 환경기준이 충족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는 사립인 각급학교⁴⁾(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하면서, 설립주체 이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⁵⁾.

4)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5)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따라서 사립인 각급학교의 경우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음,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바⁶⁾,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각급학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교실, 도서실 등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구 등의 시설·설비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민간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 교사, 교지 확보 등에 있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그 기준

나.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6)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참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 관련 규정

을 충족하더라도 같은 법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법 개정에 따른 실익은 크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2. 시행일 및 적용례(안 부칙)

「교육시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전 안전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면서, 개정 규정 제13조의2의 적용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율하기 위하여 법 시행 이후 기존 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었음.

문 의 처
02) 6788-5187

제3조(교사) ①각급학교의 교사(교실, 도서관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는 교수·학습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유치원의 교사는 교실, 화장실 및 교사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원에서 조리한 음식을 유아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실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병설유치원의 교사실과 조리실은 병설된 학교의 교사 중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에 둘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교사 기준면적(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기준면적(유치원 교사 중 교실 총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각급학교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조의2(복합시설)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국·공립학교에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둘 수 있다.

제3조의3 삭제

제4조(교사용 대지) 교사용 대지의 기준면적은 건축관련법령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5조(체육장) ①각급학교의 체육장(옥외체육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배수가 잘 되거나 배수시설을 갖춘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별표 2와 같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을 두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1. 새로이 설립되는 각급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하여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2.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6조(교지) 각급학교의 교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용 대지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장의 면적을 합한 용지로서 교사의 안전·방음·환기·채광·소방·배수 및 학생의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①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사립인 유치원의 설립주체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 또는 토지를 그 유치원의 교사 또는 교지로 사용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② 사립인 각급학교의 교지에는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는 시설·건축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립주체 외의 자가 소유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물은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교사로 사용하는 시설·건축물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건축물

가.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이 예정되어 있거나 설립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연구기관 또는 산업체가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

나. 문화·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또는 주차장 등 공공의 목적에 부합할 것

다. 학생의 교육 및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제8조(교구) ①각급학교에는 학과 또는 교과별로 필요한 도서·기계·기구 등의 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구의 종목 및 기준은 시·도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의 실험·실습실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전문계학과를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필요한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급수·온수공급시설) ①각급학교에는 급수시설을 두어야 하되, 수질검사결과 위생상 무해하다고 판명된 것이어야 한다.

②학교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1조 삭제

제12조(각종학교 등의 시설기준)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학교”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에 대하여 교육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완화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17조(학생정원의 증원 등에 따른 시설기준 등) ① 학급 또는 학과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영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에는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교육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학급의 증설이나 학생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의 기준을 그 증설 또는 증원분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